

감사위원회 운영 규정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감사위원회 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직무와 권한)

- 위원회는 본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.
- 위원회는 회의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- 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.
- 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.

제4조(구성)

- 본 회사는 감사에 같음하여 정관 제38조(위원회)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.
- 위원회의 위원(이하,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
-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고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- 위원중 1인 이상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이어야하고,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은 관련법령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- 사외이사인 위원이 사임· 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의 구성비율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달하게 된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

제5조(해임) 위원의 해임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.

제6조(위원장)

1. 위원회는 제9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회이사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수인의 위원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할 것을 정할 수 있다.
2.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 할 수 있다.
3.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7조(개최)

1.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한다.
2. 정기위원회는 분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3. 임시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.

제8조(소집권자)

1.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2.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소집을 요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9조 (소집절차)

1.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(1주간)전에 각 위원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.
2.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10조(결의방법)

1.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 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2.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

한다.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감사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3.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, 해임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재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부의사항)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- (1)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는 것에 대한 사항
- (2)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에 대한 조사의견의 진술에 관한 사항

2. 이사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

- (1)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할 염려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는 것에 관한 사항(이사회에 대한 보고 의무)
- (2) 감사보고서를 작성, 이사회에 이를 제출하는 것에 관한 사항
- (3)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,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의 유지를 청구 하는 것에 관한 사항(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유지청구)
- (4)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는 것에 관한 사항
- (5) 이사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
3. 감사에 관한 사항

- (1)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에 관한 사항
- (2)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보고를 요구하거나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는 것에 대한 사항
- (3) 이사가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보고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
- (4) 이사와 회사간의 소에 관한 대표
- (5) 주주의 이사에 대한 대표소송 청구 시 그 소제기의 결정
- (6) 외부감사인 선임 및 변경, 해임에 대한 사항
- (7) 외부감사인이 이사의 직무수행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중대한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
- (8) 외부감사인으로부터 회사가 회계처리등에 관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의 통보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조치
- (9) 감사계획 및 결과
- (10) 중요한 회계처리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

- (11) 내부통제시스템의 평가
- (12) 외부감사인의 감사활동에 대한 평가
- (13) 감사결과 시정사항에 대한 조치 확인
- (14) 내부 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
- (15) 기타 법령, 정관 및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에 관한 사항

제12조(관계인의 출석 등)

1.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, 외부인사 및 외부감사인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.
2.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3조(의사록)

1.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2.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14조(통지의무)

1. 위원회는 결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2.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이사 및 위원회에 출석한 이사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.
3. 위원회의 부의사항 중 위원회가 회사의 중요사항으로서 이사회에 부의할 필요가 있고 판단하는 사항은 이를 이사회에 부의할 수 있다.

제15조(외부감사인과의 연계) 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외부감사인의 감사계획 및 절차와 결과를 활용하여 감사 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6조(전담부서의 설치등)

1.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를 보조하는 전담부서를 설치, 운영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부서를 활용할 수 있다.
2. 위원회는 전담부서의 설치, 운영, 전문인력의 임용 및 운영비용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.

3. 위원회는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회의 사무전반을 관리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17조(감사록의 작성)

1. 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2.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18조(경비)

회의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.

제19조(규정의 개폐)

1.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.
2.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, 이사회 규정 및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부 칙

1. 본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규정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개정시행한다.
3. 본 규정은 2022년 12월 21일부터 개정시행한다.